



백지등록증 발급 및 취급요령

1. 국무원사무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날인된 백지등록증을 발급한다.
2. 백지등록증을 배부받은,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위임받은 정당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해당란에 기재발급한다.  
(그러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보고는 규정대로 하여야 함)
3.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배부받은 등록증의 사용전말을 명백히 해두고, 백지등록증을 청구할때 국무원사무처장에게 사용 명세를 보고하여야한다.
4. 해당란에 기재시 오손 또는 파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상대로 보관하였다가 전항의 보고시 첨부반환하여야한다.
5. 배부받은 용지가 부족할때에는 5 매여유를 두고 국무원사무처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한다.
6. 계인은 특별시와 도의것으로서 관인등록장부에 등록된것으로 날인하여야한다.

30037